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남궁역,
남창진, 이성배, 이효진,
허·훈, 황철규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의 위치, 지역, 입주시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,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철거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변경(안 제4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

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5순위: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)</p> <p>①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라목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0조(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」에 따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, 「<u>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</u>」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5순위: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및 공급 순위를 일부 확대·조정하는 행정적 절차의 변경이므로,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거나 별도로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